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. 11. 27 선고 2018가단116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0. 30

판결 선고 2018. 11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임야 4,57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32, 31, 30, 29, 2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65㎡ 지상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창고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통영시 C 임야 4,579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는 원고가 2,337/3,074지분 을,D가 737/3,07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.

2) E는 2003. 3. 24.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F 창고용지 407㎡(이하 '이 사건 창 고용지'라 한다) 지상에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85㎡,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21㎡ 및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27㎡(이하 '이 사건 창고'라한다)를 신축하고 2005. 3. 29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,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32, 31, 30, 29, 2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65㎡ {이하 '선내 (가) 부분'이라 한다} 를 침범하고 있다.

3)피고는 2003. 1. 28. 이 사건 창고용지에 관하여, 2005. 3. 29.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3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이하 같다)의 각 기재,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]

나. 판단

위인정사실에 의하면,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임야중2,337/3,074지분을 소유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중 선내 (가) 부분 지상에 설치된부분을 철거하고,선내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와 관련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창고용지는 그 지적 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한 곳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창고용지이므로,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을 제1내지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곽희두